#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92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정춘생·신장식·김선민

백선희 • 김재원 • 이해민

서왕진 • 황운하 • 김준형

박은정・차규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에 따르면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원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량재해사망자 또는 희생자 관리단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 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자 관리단 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9조의2(재난피해자 관리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피해자(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종합적 감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함에 있어 피해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69조의2(재난피해자 관리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재난피해자(생명ㆍ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
	우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종합적 감정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
	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
	<u>· 운영할 수 있다.</u>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
	성함에 있어 피해자 규모를 고
	<u>려하여야 한다.</u>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
	자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